



# 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전통시장 등록처리(신중양시장)

1. 서중운16-301(2016.3.10.)호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중양시장 운영회로부터 2016. 3. 10.일자로 전통시장 등록 민원사항이 제출된바,
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전통시장 등록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, 기준에 적합하여 2016. 3. 14일자로 전통시장으로 등록처리하고자 합니다.

### 가. 전통시장 등록현황

인정번호	시장명	대표자 <sup>1)</sup>	소재지	시장규모( $m^2$ , 개)				등록일
				토지면적	건물연면적	영업장면적	점포수	
제2016-1호	신중양시장	최순오	서울 중구 황학동 442번지 일대	4311.36 $m^2$	9136.54 $m^2$	2795.10 $m^2$	91개	2016.3.14

※<sup>1)</sup>現 중양시장 상인회장과 겸임

나.서류 검토결과 : 적정(검토보고서 별첨)

- 1) 동의자수 : 적정(상인, 토지소유자, 건물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)
- 2) 도 면 : 적정
- 3) 지번과 면적 : 적정
- 4) 전체상인의 명부 : 적정

다.검토의견 :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전통시장 인정등록 처리

- 붙임 1. 검토보고서 1부
2. 전통시장 인정서(안) 1부
  3. 전통시장 구역도 1부
  4. 전체상인명부 및 동의인명부(별도첨부) 1부. 끝.

